「생활교육원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9. 5. 13. 개정 판 (시행 2019. 1. 1.) → 2018. 1. 17. 개정 판 (시행 2018. 1. 1.)

바뀜 28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224/compare?from=904&to=759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9:00:32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명칭) 본 생활교육원은 삼육대학교 생활교육원이라 칭한다. 다음과 같은 각 건물로 정한다. 시온관, 에덴관, 브니엘관, 살렘관, 만나의 집〈개정 2019-05-13〉	**제1조(명칭)** 본 생활교육관은 삼육대학교 생활교육관이라 칭한다. 다음과 같은 각 건물로 정한다. 시온관, 에덴관, 브니엘관, 살렘관, 만나의 집
제2조(목적) 본 생활교육원은 삼육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훈련 및 인격 도야를 목적으로 한다.	**제2조(목적)** 본 생활교육관은 삼육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훈련 및 인격 도야를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운영감독) 본 생활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각 부처와 협력하여 생활교육원을 관리 감독한다. 〈개정 2013-08-28〉	**제3조(운영감독)** 본 생활교육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각 부처와 협력하여 생활교육관을 관리 감독한다. 〈개정 2013-08-28〉
제4조(개관 및 이용제한) 생활교육원의 개관 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하며 시설의 이용은 생활교육원생에 한 한다. 단, 우리 대학교의 유관 단체 등 외부인의 사용신청 시 사용 목적이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생활교육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 〈개정 2013-08-28〉	**제4조(개관 및 이용제한)** 생활교육관의 개관 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하며 시설의 이용은 생활교육관생에 한 한다. 단, 우리 대학교의 유관 단체 등 외부인의 사용신청 시 사용 목적이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생활교육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 〈개정 2013-08-28〉
제5조(운영규정 및 내부수칙) 생활교육원 운영규정은 생활교육원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생활관별로 내부수칙을 둘 수 있다. 〈개정 2013-08-28〉	**제5조(운영규정 및 내부수칙)** 생활교육관 운영규정은 생활교육관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생활관별로 내부수칙을 둘 수 있다. 〈개정 2013-08-28〉
제6조(직제) 생활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된다. ① 생활교육원장 〈개정 2019-05-13〉 ② 생활교육관장(각 생활관 1명) 〈개정 2016-02-29〉 ③ 생활교육원 총무 1명 ④ 조교(각 생활관 1명씩) 〈신설 2016-02-29〉 ⑤ 생활교육부장 (각 생활관 1명씩) 〈개정 2016-02-29〉 ⑥ 층장 및 기타 임원 약간 명	**제6조(직제)** 생활교육관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된다. ① 생활교육관장(각 생활관 1명) 〈개정 2016-02-29〉 ② 생활교육관 총무 1명 ③ 조교(각 생활관 1명씩) 〈신설 2016-02-29〉 ④ 생활교육부장 (각 생활관 1명씩) 〈개정 2016-02-29〉 ⑤ 층장 및 기타 임원 약간 명
제7조(임원임명 및 임기) 생활교육부장 및 각 임원은 생활교육원장이 임명한다.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생활교육부장 및 각 임원의 임기는 개강 2주전부터 동 학기 종강 후 1주까지로 정한다.	**제7조(임원임명 및 임기)** 생활교육부장 및 각 임원은 생활교육관장이 임명한다.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생활교육부장 및 각 임원의 임기는 개강 2주전부터 동 학기 종강 후 1주까지로 정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운영위원회)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원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,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1. 위원장: 전인교육원장〈개정 2016-07-27〉〈개정 2018-01-19〉 2. 서 기: 시온관장〈개정 2016-07-27〉 3. 위 원: 인성교육센터장, 에덴관장, 살렘관장, 재무팀장, 교목부처장, 학생복지팀장, 예산팀장, 관리시설팀장, 생활관 총무, 생활관영양사.〈개정 2016-07-27〉〈개정 2018-01-19〉	**제8조(운영위원회)**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관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의, 집행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1. 위원장: 전인교육원장〈개정 2016-07-27〉〈개정 2018-01-19〉 2. 서 기: 시온관장〈개정 2016-07-27〉 3. 위 원: 인성교육센터장, 에덴관장, 살렘관장, 재무팀장, 교목부처장, 학생복지팀장, 예산팀장, 관리시설팀장, 생활관 총무, 생활관영양사.〈개정 2016-07-27〉〈개정 2018-01-19〉
제9조(임원회의) 각 생활교육원별로 관장, 조교, 생활교육 부장, 각 층장 및 임원, 자치회장 등으로 임원회의를 구성하며 각 생활교육원의 제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. 〈개정 2013-08-28〉	**제9조(임원회의)** 각 생활교육관별로 관장, 조교, 생활교육 부장, 각 층장 및 임원, 자치회장 등으로 임원회의를 구성하며 각 생활교육관의 제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. 〈개정 2013-08-28〉
제10조(식당직원회의) 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식당직원회의를 개최하며 참석자는 각 생활교육원장, 재무팀장, 영양사, 총무, 각관 자치회장, 식당 조리사 대표 1명으로 한다. 의장은 수석생활교육원장으로 한다. 〈개정 2013-08-28〉	**제10조(식당직원회의)** 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식당직원회의를 개최하며 참석자는 각 생활교육관장, 재무팀장, 영양사, 총무, 각관 자치회장, 식당 조리사 대표 1명으로 한다. 의장은 수석생활교육관장으로 한다. 〈개정 2013-08-28〉
제11조(방장회의) 효율적인 생활교육원 운영을 위하여 방장회의를 개최하며 생활교육부장이 의장이 된다.	**제11조(방장회의)** 효율적인 생활교육관 운영을 위하여 방장회의를 개최하며 생활교육부장이 의장이 된다.
제12조(입사자격) 본 생활교육원에 입사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. 1. 우리 대학교의 학생 중에서 생활교육원의 운영목적을 이해하고, 생활교육원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자. 〈개정 2013-08-28〉 2. 기타 관장의 허락을 득한 자	**제12조(입사자격)** 본 생활교육관에 입사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. 1. 우리 대학교의 학생 중에서 생활교육관의 운영목적을 이해하고, 생활교육관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자. 〈개정 2013-08-28〉 2. 기타 관장의 허락을 득한 자
제13조(입사절차) 생활교육원에 입사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 제출한다. 입사전형은 각 생활교육원 내부수칙으로 정하여 실시한다. 1. 입사지원서(자기소개서, 사진첨부) 2. 전(≣)학생성적증명서(신입생은 입학 성적으로 대체함) 3. 주민등록증 등본(혹은 가족관계증명서) 〈개정 2016-02-29〉 4. 건강진단서	**제13조(입사절차)** 생활교육관에 입사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 제출한다. 입사전형은 각 생활교육관 내부수칙으로 정하여 실시한다. 1. 입사지원서(자기소개서, 사진첨부) 2. 전(≣)학생성적증명서(신입생은 입학 성적으로 대체함) 3. 주민등록증 등본(혹은 가족관계증명서) 〈개정 2016-02-29〉 4. 건강진단서
제17조(퇴사요건)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. 1. 자진사퇴 :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. 강제퇴사 : (1)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(2) 각 생활교육원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	**제17조(퇴사요건)**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. 1. 자진사퇴 :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2. 강제퇴사 : (1) 제16조 입사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규정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(2)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따라 퇴사사유에 해당 하는

현 행	개 정 안
경우 〈개정 2013-08-28〉 3. 퇴사 시 환불규정 ① 〈삭제〉 ② 〈삭제〉 ③ 퇴사 시 환불규정 퇴사원서 제출일(주)로부터 2주(14일)을 제하고 환불한다. (환불 정산일까지 거주가능) 단, 잔여일이 4주(30일)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.	경우 〈개정 2013-08-28〉 3. 퇴사 시 환불규정 ① 〈삭제〉 ② 〈삭제〉 ③ 퇴사 시 환불규정 퇴사원서 제출일(주)로부터 2주(14일)을 제하고 환불한다. (환불 정산일까지 거주가능) 단, 잔여일이 4주(30일)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.
제18조(명예제도) 생활교육원생들의 자율적이며 책임 있는 생활을 위하여 명예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각 생활교육원 내부수칙으로 정한다.〈개정 2019-05-13〉	**제18조(명예제도)** 생활교육관생들의 자율적이며 책임 있는 생활을 위하여 명예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각 생활교육관 내부수칙으로 정한다.
제19조(방 배정) 생활교육원의 방 배정은 매 학기 생활교 육관장의 지시에 따라 생활교육부장이 대행하며 배정된 방은 관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	**제19조(방 배정)** 생활교육관의 방 배정은 매 학기 생활교 육관장의 지시에 따라 생활교육부장이 대행하며 배정된 방은 관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제20조(영성교육) 생활교육원의 영성교육은 생활교육원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모든 관생들이 영성교육에 참여해야 하며, 교육내용과 횟수는 각 생활교육원의 내부수칙으로 정하여 실시한다. 〈개정 2016-02-29〉〈개정 2018-01-17〉	**제20조(영성교육)** 생활교육관의 영성교육은 생활교육관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모든 관생들이 영성교육에 참여해야 하며, 교육내용과 횟수는 각 생활교육관의 내부수칙으로 정하여 실시한다. 〈개정 2016-02-29〉〈개정 2018-01-17〉
제23조(게시판 이용) 게시 또는 광고물의 부착은 사전에 생활교육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	**제23조(게시판 이용)** 게시 또는 광고물의 부착은 사전에 생활교육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제24조(기물보존 및 변상) 생활교육원의 기물을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해 파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-08-28〉	**제24조(기물보존 및 변상)** 생활교육관의 기물을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해 파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-08-28〉
제26조(금지행위) 관생은 다음 각 항의 행위들을 금하여야 한다. 1. 음주, 흡연 및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, 부도덕한 행동 2. 주인 없는 방에 출입하는 일 3. 외부인에 대한 무단 숙식 제공 4. 기물이나 시설물의 손상 및 파괴 행위 5.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조립 행위 6. 전열기(전기담요, 전기요, 전기난로 등), 텔레비전, 비디오, 냉장고 등의 개인용 가전제품 등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 반입 및 사용 7. 음란서적 또는 음반과 파일 보유 〈개정 2016-02-29〉 8.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식사 행위(환자의 식사는 예외임) 9. 낙서나 불필요한 부착물 부착 행위 10. 식당이나 학교의 비품, 기구들을 반입하는 행위	**제26조(금지행위)** 관생은 다음 각 항의 행위들을 금하여야 한다. 1. 음주, 흡연 및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, 부도덕한 행동 2. 주인 없는 방에 출입하는 일 3. 외부인에 대한 무단 숙식 제공 4. 기물이나 시설물의 손상 및 파괴 행위 5.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조립 행위 6. 전열기(전기담요, 전기요, 전기난로 등), 텔레비전, 비디오, 냉장고 등의 개인용 가전제품 등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 반입 및 사용 7. 음란서적 또는 음반과 파일 보유 〈개정 2016-02-29〉 8.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식사 행위(환자의 식사는 예외임) 9. 낙서나 불필요한 부착물 부착 행위 10. 식당이나 학교의 비품, 기구들을 반입하는 행위

현 행	개 정 안
11. 이성을 생활교육원장의 허가 없이 출입시키는 행위 12. 그밖의 다른 생활관생에 피해를 주거나 공동생활을 해하는 행위 〈개정 2013-08-28〉	11. 이성을 생활교육관장의 허가 없이 출입시키는 행위 12. 그밖의 다른 생활관생에 피해를 주거나 공동생활을 해하는 행위 〈개정 2013-08-28〉
제27조(외박) ① 외박 : 각 생활교육원별 내부수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외박할 수 있다.〈개정 2018-01-17〉 ② 생활교육원별 내부수칙이 정한 바대로 외박을 신고해야 하며, 그렇지 않으면 무단 외박으로 간주하여 상응하는 벌점을 부과한다.〈개정 2018-01-17〉 ③ 외박 시 귀사 시간은 23:00까지로 한다.〈개정 2016-07-27〉	**제27조(외박)** ① 외박 : 각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한 자유롭게 외박할 수 있다.〈개정 2018-01-17〉 ② 생활교육관별 내부수칙이 정한 바대로 외박을 신고해야 하며, 그렇지 않으면 무단 외박으로 간주하여 상응하는 벌점을 부과한다.〈개정 2018-01-17〉 ③ 외박 시 귀사 시간은 23:00까지로 한다.〈개정 2016-07-27〉
제29조(상벌규정) 타의 모범이 되는 방과 개인은 포상하며 생활교육원 수칙을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.	**제29조(상벌규정)** 타의 모범이 되는 방과 개인은 포상하며 생활교육관 수칙을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.
제30조(처벌) 생활교육원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. 1. 퇴사: 음주, 흡연, 폭력, 마약 복용 등〈개정 2016-07-27〉 2 아침, 저녁 점호 불참 시와 기타 규정 위반 시의 처벌은 각 생활관별 수칙에 따른다.	**제30조(처벌)** 생활교육관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. 1. 퇴사: 음주, 흡연, 폭력, 마약 복용 등〈개정 2016-07-27〉 2 아침, 저녁 점호 불참 시와 기타 규정 위반 시의 처벌은 각 생활관별 수칙에 따른다.
제31조(관생의 권리) 관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. 1. 생활교육원 자치회장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2. 생활교육원내의 모든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3. 생활교육원 생활 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 〈개정 2013-08-28〉	**제31조(관생의 권리)** 관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. 1. 생활교육관 자치회장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2. 생활교육관내의 모든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3. 생활교육관 생활 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 〈개정 2013-08-28〉
제32조(자치회) 생활교육원 규칙 안에서 관생들의 신앙, 문화, 복지 등 자치활동을 위하여 자치회를 두며, 별도의 회칙을 정하여 운영한다. 관장의 지도하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.	**제32조(자치회)** 생활교육관 규칙 안에서 관생들의 신앙, 문화, 복지 등 자치활동을 위하여 자치회를 두며, 별도의 회칙을 정하여 운영한다. 관장의 지도하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.
제33조(자동차 보유) ① 생활관생이 자동차를 보유하고자 할 경우 매 입사 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관장의 허가를 득하여 총무과에 등록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-08-28〉 1. 자동차 등록증 2. 종합 보험증명서 - 본인 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증명서 사본 〈개정 2013-08-28〉 3. 주민등록등본 4. 자동차 사용 사유서 (1) 관장에게 자동차 사용허가를 득한 후 총무과에서 장기 주차권을 구입해야 한다. (2) 주차는 생활교육원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.	**제33조(자동차 보유)** ① 생활관생이 자동차를 보유하고자 할 경우 매 입사 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관장의 허가를 득하여 총무과에 등록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-08-28〉 1. 자동차 등록증 2. 종합 보험증명서 - 본인 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증명서 사본 〈개정 2013-08-28〉 3. 주민등록등본 4. 자동차 사용 사유서 (1) 관장에게 자동차 사용허가를 득한 후 총무과에서 장기 주차권을 구입해야 한다. (2) 주차는 생활교육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명칭) 생활교육원 살렘관은 신학과의 영성훈련을 위한 신학숙으로 운영한다.	**제36조(명칭)** 생활교육관 살렘관은 신학과의 영성훈련을 위한 신학숙으로 운영한다.
제38조(운영) 생활교육원 운영규칙에 준하나 특별한 교육목적을 위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	**제38조(운영)** 생활교육관 운영규칙에 준하나 특별한 교육목적을 위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